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■ 한병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311호)

2024. 9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조 문 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한병도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4. 6. 11.
3. 회 부 일 : 2024. 6. 1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형사소송법」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「공직선거법」이 개정(2021. 3. 23.)되어,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‘사법경찰관’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(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30제1항),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의 절차조항(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)에서는 ‘사법경찰관’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18조의30).

Ⅲ. 검토의견

현행법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외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권발급제한의 요청 방식 등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조항에서는 ‘사법경찰관’이 누락되어 있어, 개정안은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218조의30(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)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<u>사법경찰관</u>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「여권법」에 따른 여권의 발급·재발급(이하 “여권발급등”이라 한다)을 제한하거나 반납(이하 “제한등”이라 한다)을 명하여야 한다.	제218조의30(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</u> 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,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(이하 “보관기간”이라 한다)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	②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</u> 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	③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</u> ----- ----- -----

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,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</u>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⑤·⑥ (생략)	-----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⑤·⑥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-	---

현행법 제218조의30 제1항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여권발급제한 요청 시 서면으로 하는 등 관련 후속절차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요청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.

이는 명백한 입법상 미비로 보이는 바,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

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임.

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체계 및 실무 상 혼란 방지를 위하여, 개정안과 같이 제218조의30 제2항부터 제4항 요청주체에 ‘사법경찰관’을 추가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43